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교육 등에 부담하는 비용 법률에 상향 규정 등>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59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의무교육 등에 부담하는 비용 법률에 상향 규정 등	2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의무교육 등에 부담하는 비용 법률에 상향 규정 등(안 제3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비용 부담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무교육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의무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 <u>1. 입학금 및 수업료</u> <u>2. 교과용 도서 대금</u> <u>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u>

③ (생 략)	4. 학교급식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¹⁾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의 경우 국가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이 중에서 국가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법에 상향 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의무적 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안정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나,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개정 절차가 시행령보다 복잡하여 경직성이 높아지므로 새로운 형태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적절한 지원이 늦춰질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⁴⁾.
- 한편, 개정안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도 국가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포함시키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서⁵⁾, 학교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⁶⁾
- 이와 같은 경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선정되는 경우 학

4) 교육부는 비용 부담 항목은 교육환경, 디지털 기술, 교수·학습 방법, 장애유형별 지원 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함.

5)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6) 현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에듀집(<https://edzip.kr>)에 등록되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음

교 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사용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재학 기간 동안 접속 권한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국가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안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인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것 외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지원과 전공과와 장애영아교육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교육자료와 달리 학습자 개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에 따라 국가등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적 비용 부담 대상이 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 설정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비용 부담 항목을 법률에 열거할 경우 향후 지원 범위 확대나 조정에 오히려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부담 주체, 부담 비율, 지원 범위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⁷⁾.

<행정안전부> 일부수정

개정안의 지자체 예산 지원 의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도교육청(광주)> 신중검토

구독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소요 가능성, 교과 연계형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에 따른 과목별 사용료 발생 우려, 지원 대상 및 범위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7) 지방재정법상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법률에서 새로운 의무 부담 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재원 확보 방안,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등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등의 재정 소요 및 조달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